

Issue

Brief

美, 관세전쟁을 선포하다 궁금증 10문 10답

삼일PwC 경영연구원 | 2025년 4월



삼일회계법인



들어가며

트럼프2기 행정부 취임 20일 이후인 2025년 2월 10일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글로벌 자유 무역체제가 붕괴를 알리는 트럼프發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이 그 대상이었다면, 트럼프 2기의 관세 전쟁 대상은 모든 국가로 확대되었습니다. 4월 2일은 말 그대로 미국과 기타 국가들의 제3차 세계 대전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무기가 아닌 관세를 활용한 전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4월 2일(미국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50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 34%, 유럽연합(EU) 20%, 한국 25%, 일본 24%의 관세율이 정해졌습니다.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문제로 25% 관세 부과가 예고된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보복 관세에 나서는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등의 노력을 취할 경우 선별적 관세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 둬으로써 향후 국가별 협상력이 관세 결정의 Key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 관련한 열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주요 사실 관계 및 영향,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Q1. 4월 2일 공개된 국가별 관세 패키지 개요는?

A1. 무역 흑자 · 적자 규모와 무관한 보편관세(10%)와 적자 규모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중 더 큰 세율을 적용함을 골자로 합니다.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관세 패키지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보편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개별 국가별로는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입장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영국조차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10%의 보편관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안기고 있는 한국은 이보다 높은 상호관세율 25% 적용 대상입니다.

[보편관세 · 상호관세 비교]

구분	보편관세	상호관세
적용대상	모든 국가에 동일 적용	특정 국가와 협정에 따라 적용
관세율 결정 방식	정부 일괄 결정	국가 간 협상
변동가능성	일정 기간 고정	협상에 따라 변동 가능
특징	단순하고 명확한 적용 방식 시장 변화 반영 어려움	복잡한 협상 과정 조건 변동 가능성

출처: 언론종합, 삼일 PwC 경영연구원

Q2.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25%인지, 아니면 35%(보편관세 10% + 상호관세 25%)인지?

A2. 25%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행정명령과 팩트시트 내용을 살펴보면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는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한국에게는 25%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점별로 보면 한국 수출품은 5일부터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9일부터는 관세율이 25%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유동적인 바, 25% 세율은 추후 협상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발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차트에 적힌 한국 관세율(25%)과 행정명령에 적시된 한국 관세율(26%)이 달라 혼선이 일었습니다. 3일(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5%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Q3. 다른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은?

A3. 국가별로는 중국 34%, 유럽연합 20%, 일본 24% 등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미국의 관세 부과국은 도합 125개국으로 해당 국가들에게는 일괄적으로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교역 규모와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를 반영하여 10% 이상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은 50개국으로 집계되었습니다.

[4월 2일 공개된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율]

국가	상대국의 대미 관세율(%)	미국의 상대국 상호관세율(%)	국가	상대국의 대미 관세율(%)	미국의 상대국 상호관세율(%)
중국	67%	34%	나미비아	42%	21%
유럽연합	39%	20%	브루나이	47%	24%
베트남	90%	46%	베네수엘라	29%	15%
대만	64%	32%	북마케도니아	65%	33%
일본	46%	24%	니카라과	36%	18%
인도	52%	26%	노르웨이	30%	15%
한국	50%	25%	요르단	40%	20%
태국	72%	36%	마다가스카르	93%	47%
스위스	61%	31%	미얀마(버마)	88%	44%
인도네시아	64%	32%	튀니지	55%	28%
말레이시아	47%	24%	카자흐스탄	54%	27%
캄보디아	97%	49%	세르비아	74%	37%
남아프리카공화국	60%	30%	코트디부아르	41%	21%
방글라데시	74%	37%	라오스	95%	47%
이스라엘	33%	17%	보츠와나	74%	37%
필리핀	34%	17%	말라위	34%	17%
파키스탄	58%	29%	아프가니스탄	49%	24%
튀르키예	88%	44%	짐바브웨	35%	18%
스리랑카	88%	44%	시리아	81%	41%
알제리	59%	30%	바누아투	44%	22%
레소토	99%	50%	생피에르미클롱	99%	50%
모리셔스	80%	40%	나우루	59%	30%
피지	63%	32%	적도기니	25%	13%
가이아나	76%	38%	리비아	61%	31%
나이지리아	27%	14%	차드	26%	13%

출처: 백악관, 삼일 PwC 경영연구원

Q4.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관세율을 책정한 배경은?

A4.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이익만 챙겨가는 무역 적자국을 겨냥해, 그들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챙겨가는지 계산하여 국가별로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교역국(미국의 무역적자국)을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가는지 낱알이 파악하여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이익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포괄합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율을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 평균 관세율에 환율 조작과 무역장벽, 비금전적 혜택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그 절반으로 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실제 계산 산식(*)을 보면 무역적자와 수입액만 반영되어 있을 뿐 비관세 무역장벽과 환율 조작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text{트럼프 부과 상호관세율}(\%) = (\text{미국의 무역적자} / \text{미국의 상대국 수입액}) \div 2$$

백악관의 계산 산식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50개 교역국의 관세율은 13%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는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4년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인 한국에게는 25%라는 관세율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FTA 체결국 20개국 중 가장 높은 관세율로 FTA를 미체결한 일본(24%)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FTA 체결국이자 우방국인 한국에게 25%라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 배경에는 비관세장벽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자리에서 “한국 등의 국가가 미국에 적용하는 비금전적 제한이 최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동차를 예시로 들어 “한국은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생산 기준(예: 대기 배출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품질) 인증을 중복 요구하고 있기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한국의 비금전적 비관세장벽으로 2024년 미국의 對 한국 무역적자는 20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영향으로 한국이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 그 절반 수준인 25%의 관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부과 근거

1. 해당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
2.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미국 기업에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역외세금
3. 비관세장벽, 보조금,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4. 환율 조작, 임금 억제, 중상주의적(mercantilist) 정책 등
5. USTR(美 무역대표부)이 판단하는 기타 불공정한 무역 관행

Q5. 제3국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에게는 어느 국가의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A5. 제품의 완전한 생산 또는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제품의 국적을 판정, 해당 국가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국의 관세는 원산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해당 제품은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對중국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산지 판정 원칙에 의해 제품의 국적은 그 제품이 완전히 생산 또는 실질적으로 가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중국 내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이면 한국 자본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중국산으로 판정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타 국가로 수출 및 단순 포장 후 미국에 재수출하는 방식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타 국가에서 충분한 가공이나 실질적 변형을 거치지 않는 한 여전히 중국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떤 수준을 충분한 가공 또는 실질적 변형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규정상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여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실 판단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제3국의 관세와 물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글로벌 공급망 내 생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Q6.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는?

A6. 이번 발표는 교역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인 바, 특정 품목 또는 업종에 미칠 영향은 분석의 실익이 낮습니다. 적용제의 품목이 일부 존재하지만, 이 역시 이미 관세 부과가 확정되었거나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입니다.

금번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하여 ▲철강 · 자동차 ▲반도체 · 구리 · 의약품 · 목재 ▲금괴 ▲미국에 없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 및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미 3월 12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 중이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4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반도체 · 의약품 · 목재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개요]

- 수입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하고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1962년 제정되었으나, 약 50년 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가 미미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
-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당시, 보호무역주의 강화 수단으로 부활
- - 미 상무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관세 부과, 일부 국가 한정 고율 관세 부과,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 등 적용 가능

출처: 한국자동차연구원, 언론종합

Q7. 상호관세 부과 시행 시기는?

A7. 10% 보편관세는 4월 5일부터, 상호관세는 4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협상을 통한 관세율 조정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5일 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고,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가져가는 일명 ‘최악 국가’들에게는 이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9일 0시부터 예외 없이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는 무역적자와 비상호적 대우가 해소 또는 완화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교역국이 보복 조치를 할 경우 관세가 인상될 수 있지만, 반대로 비상호적인 무역 구조를 개선하면 관세 인하도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앞으로의 정부 협상력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Q8. 상호관세 부과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A8. 조사기관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대미 수출 (13%+α), 명목 부가가치 (10조원+α) 감소가 예상됩니다.

한국에 부과된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아 수출 기업 비중이 높은 국내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2024년 12월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60%, 멕시코/캐나다 10%, 그 외 국가(한국 포함) 20%의 관세율을 가정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13.1% 감소하고 한국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는 10.6조원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실제로는 그 이상(+α)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IBK기업은행 분석에 의하면 산업별로는 섬유·의류 · 정밀화학 · 컴퓨터 등의 대미 수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25% 관세 부과 시, 한국 주요 산업별 수출 감소 영향]

구분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율(%)	구분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율(%)
의약	-7.37	정밀화학	-50.23
반도체	1.01	전기기기	-12.41
디스플레이	-16.13	석유정제	2.25
컴퓨터	-30.92	시멘트	3.18
통신기기	-21.17	철강	-11.47
가전	-5.65	비철금속	-10.31
정밀기기	-10.38	섬유	-65.03
전자	7.8	음식료	-32.77
석유화학	-7.52	의류	-38.47

출처: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2025.2)

한편, 대미 수출을 포함한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448억 달러 감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10)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분석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 관세 부과보다 낙관적인 가정이 적용되었음을 감안하면 수출 규모는 분석결과보다 큰 5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9.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A9. 한국 정부는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기반으로 대응책을 구체화하여 전략적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낮추거나 없앨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4월 2일에 바로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별로 협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표 즉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업계 영향 점검과 대응 방향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제시한 NTE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협상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NTE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의 무역 장벽 현황을 평가하고 교역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식별해 매년 3월마다 발표하는 보고서입니다. 3월 31일 발표된 NTE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염두해두고 작성되어,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교역국이 이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번 NTE에서 한국은 어떻게 평가되었을까요?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장벽이 14가지(*) 정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방 절충 교역, ▲플랫폼 규제 법안 및 산업기술보호법, ▲원전 외국인지분 금지 등에 있어 무역 장벽이 높다고 새롭게 강조했습니다.

[2025년 NTE에 강조된 한국의 무역장벽 지적사항]

구분	지적사항 세부
국방 절충 교역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교역*을 통해 미국 방산 기술보다 한국산 기술·제품을 우선시한다고 지적 * 방위사업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군수지원 등을 받아야 함
플랫폼 규제 법안 및 산업기술보호법	‘24년 9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규제위한 공정거래법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수 미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편, 다수 한국기업 및 타국 기업은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 국가안보 관련 핵심기술(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에 대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불허한 한국의 산업기술보호법 지적
원전 외국인지분 금지	발전 분야 외국인 지분 제한 외에 원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 금지 사항 지적

출처: 한국무역협회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NTE에서 지적한 무역장벽의 실익을 따져 25%의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 중인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는 점은 사실과 전혀 다르기에, 한국 정부는 해당 계산법을 올바르게 조정하여 협상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수입정책,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장벽, 디지털 무역, 투자규제, 보조금, 환경정책 관행, 국유기업, 노동, 환경, 기타 장벽

**Q10. 25% 상호관세가 실제로 실현될 경우,
기업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

A10. 기업 돌파구는 미국 ‘안’과 한국 ‘안’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2기발 25%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국 정부가 협상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변수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25% 관세 현실화를 고려하여, 자체적인 전략을 구축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전략 중 하나는 돌파구를 미국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며 “해외 기업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등 다수 기업이 미국 투자를 약속하고 고관세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들이 관세 돌파구를 미국 ‘안’에서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25.03 「트럼프 대통령 취임 50일, 상상 이상이 된 현실」 보고서 참조).

이와 더불어, 어차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세계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라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도망칠 수 있는 국가는 더 이상 없으며, 높아진 자국 이기주의로 우방국 간의 공조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은 국내 투자를 높여 기술력으로 고관세를 승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K-조선업 등의 기술력과 시장 장악력이 높은 분야 등은 트럼프 2기발 고관세 정책 가운데서도 미국 진출 기회 및 수혜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K-원전과 K-방산도 이러한 수혜의 기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은 ❶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안’으로 공급망을 이전하거나, ❷ 베트남 등 이미 한국 기업이 진출한 제3국도 상호관세율이 높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고관세를 피하려다 오히려 높은 인건비에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높은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AI, 로봇, 디지털 트윈 등의 첨단기술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 기업에게만 중요한 기술은 아닙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고관세를 피해 공급망을 이전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인건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첨단 기술 투자를 높여, 이러한 시장을 선점하고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국 주요 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삼일PwC경영연구원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트럼프 2기의 선거 공약의 주요 내용은 ‘트럼프 2.0 시대 도래에 따른 영향 점검 (‘24.11)’ 참조

트럼프 2기 50일 행보의 주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50일, 상상 이상이 된 현실(‘25.03)’ 참조

Author Contacts

이은영 상무

삼일PwC경영연구원

eunyoung.lee@pwc.com

안정효 책임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jeonghyo.ahn@pwc.com

김효진 선임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hyojin.h.kim@pwc.com

신서윤 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seoyoon.shin@pwc.com

삼일PwC경영연구원

최재영 원장

jaeyoung.j.choi@pwc.com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4W-RP-043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